

#### [서식 예] 요양불숭인처분 취소청구의 소(산업재해)

# 소 장

- 원 고 O O (주민등록번호) OO시 OO구 OO길 OO (우편번호 OOO-OOO)
- 피 고 근로복지공단 ○○시 ○○구 ○○길 ○○ (우편번호 ○○○-○○○) 대표자 이사장 △△△

#### 요양불승인처분취소청구의 소

### 청 구 취 지

- 1. 피고가 19○○. ○. ○. 원고에게 한 요양불승인처분은 이를 취소한다.
- 2.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.

라는 판결을 구합니다.

## 청 구 원 인

- 1. 원고는 ☆☆건설주식회사에 입사하여 위 회사가 시공중인 판교도로 건설현장소 장으로 근무하던 중 19○○. ○. ○. 11:30경 사무실에서 직원들과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하다가 졸도하여 ★★병원으로 이송하여 치료를 받고 있는바, 위 병원 의 진찰결과 뇌졸중(뇌간경색)으로 판명이 되었습니다.
  - 그리하여 원고는 위 뇌졸중이 업무집행상의 과로로 인하여 발병된 것이므로



요양급여를 청구하였으나 피고는 19〇〇. 〇. 이. 위 뇌졸중은 기존질병으로서 업무상 질병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처분을 하였습니다.

2. 그런데 위 도로공사는 소외 토지개발공사가 분당신도시 입주자들을 위하여 세 곡동과 판교인터체인지 사이 및 시흥동과 여수동 사이의 기존도로를 확장포장하는 공사로서 당초 19○○. ○. 작공하여 분당신도시 입주개시일인 19○○. ○. 까지 15개월 동안에 완공하게 되어 있었으나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지연으로 인하여 설계상의 절대공사기간 중 5-6개월을 허비한 후에 본공사를 착수함으로써 완공예정일인 19○○. ○. 말 현재 전체 공정의 85퍼센트밖에 완료하지 못하였습니다.

원고는 현장책임자로서 용지보상과 지장물철거가 지주의 이기주의적인 대응으로 계속 늦어지는데다 착공 4개월동안에 3-4개소의 도로횡단배수흠관 일부와 여수교 교량 확장부의 기초공사 정도만 수행하는 등 초기에 과다한 비용의 투입에도 불구하고 공사진척상황은 매우 지지부진하였으므로 회사에 대하여 심리적으로 부담감을 느껴오고 있었습니다.

더군다나 원고는 19〇〇. ○. 부터는 동절기임에도 무리하게 공사를 추진할 수밖에 없었고 휴일에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매일 07:00부터 21:00까지 현장에 매달려 격무에 시달리면서 기업체 간부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잠시도 긴장감과 압박감에서 벗어나지 못함으로써 1년 이상 정신적, 육체적 과로가 축적된 나머지완공 1개월을 앞둔 19〇〇. ○. ○. 07:00경 현장에 출근하여 작업을 지시하고 10:00경 사무실로 돌아와 직원들과 작업에 관한 논의를 하던 중 갑자기 뇌졸중을 일으켜 쓰러졌습니다.

한편 대법원판례(1991. 4. 12. 선고 91누476판결)에 의하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기인하여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, 질병, 신체장애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, 그 재해가 업무와 직접 관련이 없는 기존의 질병이더라도 업무상의 과로가 질병의 주된 발생원인에 겹쳐서 질병을 유발 또는 악화시켰다면 그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, 또한 과로로 인한 질병에는 평소에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 질병이 업무의 과중으로 급속히 악화된 경우까지도 포함된다고 보고 있습니다.

3. 따라서 원고의 뇌졸중이 업무상질병이 아님을 전제로 한 피고의 이 사건 요양 불승인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를 면할 수 없습니다.



이에 청구취지와 같은 판결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르게 되었습니다.

# 입 증 방 법

1. 갑 제1호증

1. 갑 제2호증

심사청구서

재심사청구서

## 첨 부 서 류

1. 위 입증방법

1. 소장부본

1. 납 부 서

각 1통

1통

1통

2000. 0. 0.

원 고 ㅇㅇㅇ(인)

### ○ ○ 행정법원 귀중



관할법원	※ 아래(1)참조	제소기간	※ 아래(2) 참조
청 구 인	피처분자	피청구인	행정처분을 한 행정청
제출부수	소장 1부 및 상대방수 만 큼의 부본 제출	관련법규	행정소송법 9 ~ 34조
비 용	·인지액: ○○○원(☞민사접수서류에 붙일 인지액 참조) ·송달료: ○○○원(☞적용대상사건 및 송달료 예납기준표 참조)		
불복방법 및 기 간			

#### ※ (1) 관할법원(행정소송법 9조)

- 1. 취소소송의 제1심 관할법원은 피고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임. 다만, 중앙행정기관, 중앙행정기관의 부속기관과 합의제행정기관 또는 그 장, 국가의 사무를 위임 또는 위탁받은 공공단체 또는 그 장이 피고인 경우 대법원소재지의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
- 2. 토지의 수용 기타 부동산 또는 특정의 장소에 관계되는 처분 등에 대한 취소 소송은 그 부동산 또는 장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에 이를 제기할 수 있음.

#### ※ (2) 제소기간(행정소송법 20조)

- 1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함. 다만, 다른 법률에 당해 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의 재결을 거치지 아니하면 취소소 송을 제기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는 때와 그밖에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 는 경우 또는 행정청이 행정심판청구를 할 수 있다고 잘못 알린 경우에 행 정심판 청구가 있는 때의 기간은 재결서의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기산함.
- 2.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(제1항 단서의 경우는 재결이 있은 날부터 1년)을 경과하면 이를 제기하지 못함. 다만,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함.